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11. 2. 9.)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 단, 상한액의 85% 정액지급시 실비정산 면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지방공무원과-684(2011.03.04.)호 및 도 회계계약심사과
-4215(2011.03.04.)호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통보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2는” 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와 정산 및 제5항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영 제8조의2 중 <u>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u>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후[시행 2011. 7. 1]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 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개정 1982.12.20 지기 180-16411호
1989. 4. 3 지기 01300-3070호
1995.12.21 지공 12500- 86호
1998. 5. 6 운영 12500- 35호
2008. 4. 6 지방공무원과-41호
2011. 3. 3 지방공무원과-68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1982.1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호 ○○직할시(도) 지방전문직공무원(지방계약직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 >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